



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관련 법제처 심사안 내용안내

자료제공 : 제도 연구실

전기사업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최근 협회에서 입수한 동법시행규칙의 법제처 심사안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그밖의 사항은 협회 민원봉사실[02)888-4623~5] 또는 제도연구실[02)884-1863]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 아래의 법제처 심사안 주요내용은 동법시행규칙의 최종개정과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공포 즉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.

1. 주요골자

- 가.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를 전기 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완료 후 2월 이내에서 공사완료 후 전기를 공급하기 전으로 변경하여 안전이 확보된 전기설비만 사용토록 함(안 제35조제1항)
☞ 종전 제35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는 안 제35조의2로 이관되어 신설

- 나.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결과(별표 11) 총 6개 점검항목 중 절연저항·온도내배선(온도·온도내배선 포함)·누전차단기 및 개폐기(차단기)항목등 4개항목이 모두 부적합한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점검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점검현장에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전기설비에 대한 3차점검을 폐지하여 개수기간을 단축하도록 함(안 제35조의2제2항 및 제35조의4)

제1항)

- 다. 자격기준이 완화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대상을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땜높이 10미터이하의 소수력발전소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를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인 모든 발전설비로 확대하여 비용절감 및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(안 제42조제1호다목)
- 라. 전기사고발생시 사고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중대한 전기사고의 종류 및 통보방법 등을 규정하고, 사고조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함(안 제50조의3, 별표 19 및 별표 20)
- 마. 발전소의 보일러·터빈 등에 사용되는 압력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시에 용접부에 대하여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하고, 자가용수력발전소는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발전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28조제1항 별표 5 및 제32조제2항 별표 10)

[전기안전관리관련 주요내용]

가.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(상주, 위탁, 선임자격 완화)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(대행기관, 용역업체)의 소속기술인력으로서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며,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에 선임될 수 없음. 다만, 상주(법 제73조제1항)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인이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0조제3항)

☞ (종전 제40조제4항)

- ① 1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(변경없음)

- ②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(신설)
- ③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(신설)

나.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,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(안 제43조제2항 및 제4항)

☞ (종전 시행령 제48조)

다.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중 감리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공사를 다음과 같이 함(안 제44조제2항제6호 ☞ 종전 제40조제3항 별표 12 제2호가목)

- ①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·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(변경없음)
- ②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(증설공사 추가)

라.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 또는 시·도지사의 판할구역으로 함(안 제44조의2제1항)

☞ (종전 시행령 제46조제3항)

마.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기술인력간 담당 전기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행현황을 기술인협회에 통보하도록 함(안 제45조제3항 신설)

바. 기술인협회가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전기안전관리자의 선·해임 및 미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0조의2제2항)

2. 시행일자: 공포일부터 시행

〈끝〉